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. 6. 1 선고 2019가단5197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백강수, 문주연, 김대현

피고A

소송대리인 B

변론 종결2021. 5. 18.

판결 선고2021. 6. 1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B 사이에 보령시 C 전 350㎡에 관하여 2018. 4. 10.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제75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피고와 B 사이에 보령시 D 전 486㎡에 관하여 2018. 4. 10. 체결한 증여계약을 4,924,470원 한도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,924,4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손해행위의 성립

- 1) 피보전채권 원고는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자로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09차전42로 'B은 원고에게 17,986,087원과 그 중 4,852,973원에 대하여 2009. 3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'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2009. 3. 31.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.
- 2) B과 피고의 증여계약 B은 2018. 4. 10. 아들인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(이하 '이 사건 각 토지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증여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고 한다)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- 3)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의 무자력 가) 적극재산

1	이 사건 각 토지	23,098,320) 7,108,920원 + 15,989,400원
2	경기 양평군 E, F, G, H 중 각 1/2 지분, I 중 20/974 지분	12,222,000
합계	35,320,320	

나) 소극재산

1	원고	30,137,3992) 2018. 2. 5.경 원리금
2	국민건강보험공단	7,591,850
3	양평군	79,030
4	J은행	3,709,000
5	보령시	160,310
6	K(근저당권 채권최고액)	15,000,000
7	L(근저당권 채권최고액)	9,000,000
합계	65,677,589	

나. 원고는 2019. 3. 19.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,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로 다투다가 2021. 4. 6. 4회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어 같은 달 20일로 판결선고 기일이 지정되었는데, 피고는 2021. 4. 7.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, 2, 5 내지 10, 12, 1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3, 4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, M기관장, K, 보령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소의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직권 판단

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로 지목된 재산처분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으로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.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B에게 회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은 실현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졌다.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.

3.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

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나(민사소송법 제98조),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의 불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비용이나 패소 당사자의 행위가 그 행위 당시에 있어서 필요하였던 경우의 비용은 그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(민사소송법 제99조).

위 인정사실에 따르면,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을 것인바, 이 사건 소송비용은 패소 당사자의 행위가 필요하였던 경우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한다.

판사김수정

1) 7,108,920원 + 15,989,400원

2) 2018. 2. 5.경 원리금